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야기

인권



통권 165호 ISSN 1599-9599

2026 07+08

Vol. 165

재난 상황에서의
노인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집
초고령사회
안전과 돌봄의 기준을 묻다



내일의 인권

- 04

특집- 테마 스토리
초고령사회에서의 재난 상황
노인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소준철(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 08

특집- 오피니언1
초고령사회 재난 대응의 기준:
인권 관점에서 재난대응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배화옥(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명예교수)
- 12

특집- 인터뷰
초고령사회의 재난 상황에서 마주하는 사람들
소방교 정재준(경상북도소방본부 안동소방서)
- 16

특집- 오피니언2
초고령사회의 재난 피해자 권리
정지연('함께하는 연구' 책임연구원)



오늘의 인권

- 20

인권 만화경
몰랐던 길
정영룡(작가)
- 22

지금, 인권감수성
그 누구도 재난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기를!
박병은(모든사람_인권교육연구단체)
- 26

지구인 이야기
돌봄에서 권리로
노인 인권 보장을 향한 국제적 노력
나영재(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 30

식탁인권학
노인의 밥상
홀로 먹는다는 것의 의미
- 32

책으로 읽는 인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줄 방법에 대하여
정혜승(북살롱 오티움 공동대표)
- 36

영화 읽는 시간
노인의 안락사를 권유하는 섬뜩한 사회 <플랜 75>
이주현(전 씨네21 편집장)

모두의 인권

- 40

인권위가 말하다 1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이유로 한
임기제 근로자 계약 종료는 차별
- 42

인권위가 말하다 2
관행에 따른 심야조사 강행은 인권침해
- 44

인권위가 말하다 3
모든 임신부에 대한 수영장 이용 제한은 불합리한 차별
- 46

인권위가 말하다 4
공공기관 등 업무 수행 중
장애인에게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안내 제공해야
- 48

인권위 브리핑
인권위, '국가인권교육원과 함께 하는 인권 토크' 운영



초고령사회에서의 재난 상황 노인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글_ 소준철(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일상화된 재난

재난은 위험하다. 그러나 재난이 어째서 위험한지를 명확히 말하는 일은 무척 어렵다. 예컨대 UN에 보고된 통계에서 대한민국의 재난 피해자 수를 보자. 5년 단위로 검토하면 2005년 14,652명, 2010년 93,032명, 2015년 540명, 2020년 131,737명, 2022년 77,313명으로 늘어나는 듯 보인다. 그렇지만 2006년과 2009년 사이, 2012년부터 2019년 사이를 함께 고려하면 재난이 딱히 '심해졌다'고 잘라 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는 재난의 양상이 이전과 다르다는 인식을 갖는다. 그 인식은 통계로 오지 않는다. 이견 차라리 재난이 더는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품고 살아야 하는 '상태'로 옮겨가고 있다는 감각에서 온다. 폭염과 한파, 호우와 산불, 지진, 감염병, 화재 등 저마다 특정한 시기에 닥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겹쳐지는 일이 잦아지기 때문이다.

재난은 제도적으로 유형의 구분이 명확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고 있는데, 전자는 태풍, 호우, 홍수, 대설, 강풍, 한파, 폭염, 가뭄, 지진 같은 자연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후자는 화재, 붕괴, 폭발, 사고에서

부터 전기망, 통신망, 교통망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마비,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이며 기술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구분은 제도적으로 명료하게 구분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모호할 때가 많다. 2017년 포항지진은 초기에는 자연재난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사회재난이었으며, 2022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수도권 폭우 역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적이었다. 또한 폭염은 높은 기온이 문제지만, 냉방이라는 비용과 기술의 문제, 외로움과 단절이라는 관계의 문제가 피해자를 만든다. 요컨대 순수하게 자연적인 재난도, 순수하게 사회적인 재난도 없다.

재난은 자연의 힘과
사회적 조건이 얹혀 발생하며,
그래서 재난을 묻는 일은
우리 사회의 현재를 묻는 일이다.

정보로서의 '재난'을 넘어서기

우리는 재난을 보통 속보, 뉴스, 재난문자로 접한다. 우리는 재난을 흔하게 과거형의 정보로 듣는다. 전통적인 텔레비전이나 온라인 언론은 사고 당시에는 속보를, 사고가 끝난 후에는 뉴스를 제공한다. 또 아주 가끔 미래형의 예보도 있지만, 재난은 주로 경고의 목소리로, 혹은 참담하고 비참한 사태로 드러나는 셈이다. 문제는 재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재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정보'로 접하는 것과 '재난 속에서 살(아)남'기는 다르다. 재난은 그것을 경험한 누군가에게 일상이다. 그들에게 재난은 겪음으로써 무언가를 잃는 일이다. 타인의 재난과 달리 재난을 경험하는 일은 그 감정의 파고를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2025년 8월 경남 산청의 상능마을은 3월의 산불과 7월의 폭우와 산사태 등, 두 차례의 연이은 재난으로 마을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어 800미터 떨어진 곳에 이주단지를 지어 주민 전체가 이주하기로 결정했다. 열세 가구 열여섯 사람이 살던 마을은 새로운 단지가 들어서는 2028년까지 인근 모텔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다. 재난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이는 한 마을에서의 시간과 터전을, 또 사람들의 일상을 통째로 파괴했다. 그래서 재난을 묻고 고민하는 일은 재난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아니라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우리가 정말 아는지, 무얼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을 말할 수 있을지 묻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재난은 언론과 행정에 의해 '피해'의 언어로만 다뤄질 때가 있는데, 문제는 '피해'의 크고 작음보다 재난 이후의 일상이 '돈'으로만 이야기될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재난을 살아내는 사람의 삶과 그 어려움을 놓친다. 포항지진 이후 지원금은 여러 사태를 낳았다. 지원금을 받았던 피해자의 주택이 알고보니 '불법건축물'이었다는 게 밝혀져 지원금을 반납하고, 채납료를 문 경우도 있었다. 또 복구용자금은 '저리'로 제공되었지만 수익이 없는 노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돈이었다. 재난은 제도에 의해 피해가 '등급화'되고, 고통은 '금액'이 되며, 재난보상금과 복구용자 등은 재난의 종결처럼 여겨진다. 그럼에도 재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 특히, 노인들은 가장 문제적이다.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또 부유한 사람들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재난은 그 영향을 깊게 드리웠다. 여기서 취약한 사람들은 위태로움을 느끼며 생존했고, 겨우 살아남았다. 사람들의 트라우마는 깊고, 충격이 심한 몇몇은 일상이 뒤바뀌었다. 한 여성은 아파트와 일터 모두 실내가 파손되었는데, 갈라진 벽을 보고 있기가 너무 흉해 페인트와 석고를 바르다가 허리를 다쳤다. 그가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잠을 충분히 자는 일이다. 이 사람에게 재난은 2017년에 끝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갈라진 벽과 설친 잠으로 지금도 계속되는 상태다.

재난은 인프라가 고장나는 순간이다

2023년 5월 31일 오전 6시 41분,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대피를 준비하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내용은 이랬다.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짝꿍과 아이를 끌어안고 막막해했다.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떠오르지도 않았다. 더욱이 네이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누리집, 모두 먹통이었다. 재난주관방송사라는 KBS를 부랴부랴 켜다. 별 내용이 없었다. 그러다 7시 3분 행정안전부로부터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이란 위급재난문자가 왔고, 7시 25분에서야 서울특별시는 경계경보가 해제되었다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이 사건을 두고 경계경보 발령 시간이 늦었고, 문자 발송 시간이 늦었다는 비판이 컸다. 시간만이 문제는 아니다. 만약 실존하는 재난 상황이었다면, 문제는 극심하다. 대피소의 위치는 물론이며,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언지 따위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우리 가족이 아이를 끌어안은 듯, 돌볼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위급재난문자”건 “안전안내문자”건 별 쓸모 없는 문자에 불과하다. 형식적으로는 경고를 전했을지언정, 이를 통해 피신할 방법이 단 하나도 제시 되지 않았다.

재난문자는 마땅한 ‘재난전달체계’이지만, 대피전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2025년 3월 28일 동아일보는 “고령층이

3G폰을 사용하여 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받아도 휴대폰 사용법을 몰라 재난문자를 확인하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이동통신망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 TV자막과 라디오를 통해 재난방송을 송출”하며, “자동음성통보(마을방송),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보시설, 경보시설을 활용해 마을에 재난정보를 안내”한다고 대응했다. 이 대응은 ‘전달체계’만을 말한다. 정보를 어떤 경로로 흘러보낼지 촘촘하게 늘어놓지만, 정작 그 정보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몸을 피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비어 있다. 그 빈 자리를 매우 도록 떠넘겨진 건 가장 작은 단위인 ‘마을’ 혹은 ‘동’이다. 자동음성 통보든 마을방송이든 재해문자 전광판이든, 방송을 전달받은 누군가가 노인을 찾아 함께 대피해야 하는 마을 사람들의 몫이다.

문제는 그 마을이 어디에나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마을방송이 집집마다 달고 이웃이 서로의 사정을 아는 곳이라면 이 방식은 그런대로 작동한다. 그러나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며, 홀로 사는 노인이 늘어나는 도시와 멀찍이 떨어져 홀로 사는 노인이 늘어나는 시골에서 노인의 피신이 ‘동 행정’과 ‘마을’의 몫이라는 건 늘 불안하다. 재난전달체계는 있지만, 사람을 함께 이동시키는 관계망이 끊어진 사회만을 확인할 뿐이다.

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전달체계의 확산 역시 걱정된다. 웹사이트는 종종 먹통이 된다. 앞선 예처럼 트래픽이 폭증할 때, 혹은 인터넷망, 데이터센터 등 관련된 시설에 사고가 날 때도 종종 멈춘다. 이런 사정은 재난 상황에서 관련 정보를 ‘직접 찾으랴’는 국가의 재난예방교육을 의심하게 한다. 국가는 정보를 흘뭉린 뒤 대처의 책임을 넘겼고, 그렇게 위험은 사사화된다. 즉, 재난 상황에서 모든 것은 고장 나 있기 쉽다. 여기서 우리가 재난을 바라볼 때 흔히 범하는 잘못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문제없이 작동할 때를 기준으로 삼아 상상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복구’하느냐는 질문이다. 웹사이트의 트래픽을 늘리는 문제를 넘어서, 정부의 홈페이지나

재난주관방송사가 아닌 민간포털사이트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물론 이런 보장이 불필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한 가지를 전제한다. 화면을 들여다보고, 검색창에 무언가를 입력하고, 스스로 길을 찾아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민간포털을 더 끌어다 쓰든 서버를 늘리든, 그 정보를 받아 해독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표준으로 두는 한, 3G폰을 쥔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그 표준 바깥에 그대로 남는다. 전달체계가 더 튼튼해지는 것과 더 많은 사람이 실제로 대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초고령사회는 다종적이다

인간은 단순한가. 도나 해러웨이는 ‘응답’을 말한다. 이 세계는 온전히 설명되지도 않고 예측도 불가능한 다종 간의 뒤얽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인정하자고 말한다. 그는 인간만의 사회가 비인간과 조우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개방성을 길러야 한다고 보았다. 정작 ‘인간사회’는 단일할까? ‘인간사회’도 꽤나 다종적이다. 갓 태어난 영아와 걸음이 느린 노인, 매일 달리기를 하는 청년, 아이를 품은 여성처럼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몸으로 산다. 또 성취에 익숙한 사람, 가까운 사람을 잃었던 사람, 몸과 마음을 다쳤던 사람 등 또 다른 마음으로도 산다. 우리는 사회에서 ‘단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다양한 종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만큼이나 한 종 안에서도 ‘다종성’을 알아차리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가 아니며, 함께 살아감으로써 존재한다. 누가 있으며 누가 생겨나고 있는지 묻는 것이 의무다(도나 해러웨이, 2019, 108쪽).”라는 말을 새길 필요가 있다.

재난의 상황에서 다종성을 말하는 이유란, 기존에 흔히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회복’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기 위해서기도 하다. 회복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재난 이후 ‘회복’을 말하는 것에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재난은 멀쩡한 사회가 바깥에서 부수어진 경험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미 불균등하게 짜여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웹사이트가 멈췄다는 보도에 앞서 그 웹사이트에 닿지조차 못한 사람이 있었고, 재난문자가 늦었다는 지적에 앞서 그 문자를 확인조차 못한 이도 있었다. 또 스스로 정보를 찾고 스스로 걸어서 대피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달된 ‘정보’는 무용했다. 이러한 사정은 노인에게 특히 뼈아프다. 돌봄과 정보와 이동에서 위태위태한 이들에게 ‘회복’은 취약했던 원상태로의 복귀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표준으로 삼고, 누구를 바깥에 두었는지 다시 묻고, 가장 늦게 정보가 전달되거나 전달되더라도 피신할 수 없는 이들을 기준으로 새 판을 짜야 한다.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취약계층’을 호명하며,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인 제도와 정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안전취약계층’이라는 하나의 이름은, 그 안의 다종성을 도리어 지운다. 앞서 말했듯이 같은 노인이라도 도시와 농촌이, 남성과 여성이, 홀로 사는 이와 곁에 가족이 있는 이가, 몸이 성한 이와 거동이 불편한 이가 재난을 겪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재난 상황에서 노인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노인을 비롯한 다종의 취약한 자들을 불러 각각의 처지를 살피는 질문이어야 한다.

즉, 취약성을 근거로 각자가 안전하게 이어지는 조건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재난을 두고 누가 먼저 무너지는가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일 수 있는지를, 먼저 무너지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야 한다. 노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마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태도는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존재에 대한 보호로 나아가야 한다. **인권**

1) 도나 해러웨이, 황희선 옮김,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
2) 김준홍, “아직도 계속되는 삶의 여진: 포항지진 후 1년”, 다양성+ASIA. (URL: <https://diverseasia.snu.ac.kr/?p=2593>)



초고령사회 재난 대응의 기준: 인권 관점에서 재난대응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글_ 배화옥(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명예교수)

초고령사회 확산과 인권의 교차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2024년 12월 말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재난 취약계층의 양적 확대를 의미한다. 2025년 영남권 산불 당시 사망자의 9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었는데 대부분 미처 대피하지 못하거나 대피 중에 사망한 것이다. 이처럼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찾아오는 자연재해가 아니다. 구조적 불평등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특정 집단에 피해가 집중되는 재난의 불평등성은 초고령사회의 아픈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재난관리체계를 인간 존엄성과 안전권 보장이라는 인권적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고령자 인권을 보장하도록 우리나라 재난 대응 체계를 혁신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고령자의 재난 취약성

고령자가 재난에 취약한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으로 인한 정보 소외, 주거환경의 열악함,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 등 복합적 취약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고령자 가운데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하여 거동이 힘들거나 보조기구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상당하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이 높아 위험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인지적 취약성이 동반되기도 한다. 또한 1인 독거노인 가구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재난 시

외부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될 위험이 심화하고 있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저하되면서 생활 자립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친숙하지 못하여 재난 상황 시 자력 대피가 불가능하므로 직접적인 구조·구급 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초고령사회의 재난 대응은 시혜적 차원의 보호를 넘어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권을 실현하는 차원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 기반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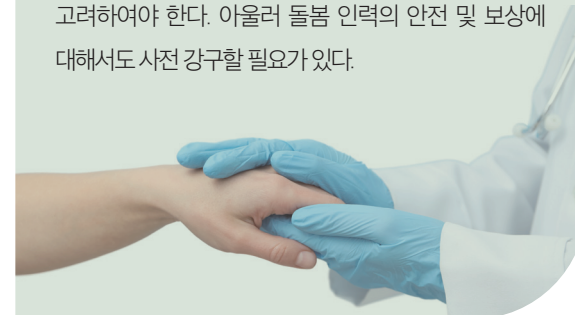
① 다각적 정보 접근

재난 상황에서 정보의 적시 전달은 생명권과 직결되는 인권 보장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고령자에게 재난 경보와 대피 정보가 스마트폰이나 QR코드 등 디지털 매체 위주로 제공되면서 디지털 소외가 심화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스마트폰과 동시에 마을 방송, TV 자막, 유선 전화 등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결합한 융합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재난 문자 크기를 확대하고 전문 용어를 배제하고 그림 문자(Pictogram)나 쉬운 우리말을 활용하는 고령자 친화적 매체를 가동하여야 한다. 아울러 독거노인을 위해 가족, 이웃, 지역사회 단체를 연계한 비상 연락망을 확충하여 정보 접근의 다각화를 기하거나 떨어져 사는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재난 방송을 동시 전송하여 고령자의 피난을 촉구할 수 있는 대리 알림 시스템 도입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② 돌봄 공백 방지

기존의 돌봄 서비스(노인맞춤돌봄, 장기 요양 등)가 재난으로 인해 중단되면 고령자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 돌봄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각 지자체는 돌봄 연속성 계획(Continuity of Care Plan, CCP)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지원체계 기준을 수립하여 재난 발생 시 고령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 중심의 상호 돌봄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노노케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지역 주민 간 호혜적 관계망을 구축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돌봄 인력풀을 미리 구성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돌봄 인력의 안전 및 보상에 대해서도 사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③ 의료 및 건강 보장 기준

고령자는 만성질환 보유율이 높고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재난 발생 시 직접적인 외상뿐 아니라 기존 질환의 관리 중단으로 인한 2차 피해(중속적 사망)에 극도로 취약하다. 따라서 재난 상황 속에서도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은 중단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령자 신체적 건강 특성을 고려한 구조·구급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먼저 지병이나 복용 약, 치매 여부를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여 구조·구급 시 고령자 맞춤형 조치가 즉각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위험 상황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인지 저하 노인을 위한 구조 요청 자동 인지 기능과 노인성 질환자 이송체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고령자 친화적 피난소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대피소에 고령자 친화 공간 및 만성질환자 맞춤형 의약품과 전문 의료진의 상주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신적 트라우마 및 고립감 해소를 위하여 심리적 응급처치 등 심리 건강도 보장해야 한다. 피난소를 벗어나 거주지로 복귀하였을 때도 의료, 간호, 생활 지원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의료 및 건강 보장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④ 개별 피난 계획 및 지역사회 공조 체계

각 지자체는 개개 고령자와 협의해 구체적인 대피 경로와 대피 도우미를 지정하는 개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고령자들도 주민자치회나 자율방재조직 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병력이나 상황을 사전 공유하는 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스스로 피난이 곤란한 요양 필요 고령자의 정보를 사전 파악하여 명부로 관리해야 하며 이 명부는 평상시 꾸준히 갱신되어야 한다. 재난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전제로 하되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이웃, 민생위원, 자율방재조직 등 피난지원 관계자에게 즉시 공유되어 안부 확인과 대피 지원에 활용되어야 한다.

⑤ 고령자 재난 대비 행동 가이드라인

재난을 대비하여 고령자 스스로 위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낙상사고나 추락을 방지하고자 가구 고정, 장애물 제거 등 실내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 중요 의료 기록 및 신분 서류는 방수 봉투에 보관하도록 한다. 구조 활동이 집중되는 재난 직후 72시간을 자택에서 버틸 수 있도록 식품·연료 등 비축품을 구비해야 한다.

동시에 급히 피난할 때를 대비해 상비약, 마스크, 간이 화장실, 물티슈, 조리가 필요 없는 영양식 등을 배낭에 넣은 비상용 휴대품을 항상 꺼내기 쉬운 곳에 준비해 둔다. 재난 시 일반 통신망 마비에 대비하여 공중전화 활용법, 재해용 음성 메시지 다이얼(171) 사용법, 타 지역 친척을 통해 안부를 전하는 삼각 연락법 등을 평소 익혀두어야 한다.

향후 과제

초고령사회에서의 재난 대응은 단순히 인적·물적 피해의 규모를 줄이는 기술적 과정을 넘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의 인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가치론적 질문이다. 따라서 고령자를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향후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의 정비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재난 취약계층으로서 고령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재난안전 관리계획 수립 시 고령자 인권 영향평가를 의무화 해야 한다. 둘째, 통계의 세분화이다. 재난 통계 작성 시 나이, 가구 형태, 기저질환 유무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세분화하여 축적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정밀한 고령자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예산의 우선 배정이다. 고령자 친화적 재난 인프라(대피소 개선, 맞춤형 경보 시스템 등) 구축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재난관리는 모든 국민이 재난 앞에서도 자신의 인간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돕는 고귀한 책무이다. 고령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인권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어떤 재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안전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으며 인권의 관점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안전(Leave No One Behind)을 실현하는 데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인권」

Leave No One Behind



초고령 사회의 재난 상황에서 마주하는 사람들

불길이 번지는 현장에서, 소방관은 불만 끄는 사람이 아니었다. 문을 두드리고, 손을 잡고, "나가야 합니다"를 반복하며 사람을 설득했다. 초고령사회의 재난은 이미 달라졌다. 정보도, 이동도, 마음도, 취약한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는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글_ 편집실

인터뷰 협조_ 소방교 정재준(경상북도소방본부 안동소방서)

Q_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가 있는 주민, 혼자 사는 어르신 등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동 수단, 인력, 시간, 설득, 위치 파악 등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힌 어려움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A_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한된 시간과 여건 속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면서도 빠르게 대피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대피를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노부부는 집으로 번지는 불을 바가지로 직접 끄고 계셨고, 여러 차례 대피를 권유했음에도 집을 지켜야 한다며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Q_ 재난 상황에서는 ‘빨리 대피하라’는 안내가 중요하지만, 고령자에게 그 정보가 실제로 닿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정보 전달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A_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직접 방문을 통한 대피 안내’였습니다. 재난안내문자와 마을 방송이 여러 차례 실시됐지만, 고령의 주민들은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문자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청력이 좋지 않아 방송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문자나 방송만으로는 대피 유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을 이·통장과 협력해 주민 거주 현황을 파악하고, 소방차를 이용해 마을을 순찰하며 집집마다 직접 방문해 대피를 안내했습니다. 또한 관할 의용소방대원들도 마을 곳곳을 돌며 주민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대피를 지원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일부 어르신들이 평생을 살아온 집과 농작물을 두고 대피하기를 주저하셨다는 점입니다. 또 직접 방문했을 때 아무도 안 계시는 경우에는 이미 대피를 했는지, 아니면 잠깐 외출하신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대피 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Q _ 긴급한 구조와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고령자의 의사를 듣고 설득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나가겠다”, “집이나 가축을 두고 갈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이 있었는지,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합니다.

A _ 오랜 세월 살아온 삶의 터전이고 생계와도 직결된 공간이다 보니,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쉽게 떠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대피를 안내하기보다, 현재 재난 상황과 산불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불길의 확산 속도와 예상 이동 경로, 현재 위치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마을 이장이나 이웃 주민, 유관기관 복지 담당자 등 평소 신뢰 관계가 형성된 분들과 함께 설득하는 방법도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대피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소방과 경찰이 협력하여 강제 대피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Q _ 이번 대응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서는 재난 대응 방식이나 매뉴얼도 달라져야 한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_ 이번 산불 대응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서는 기존의 재난 대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대피소를 지정하고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방뿐만 아니라 경찰, 보건소, 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평상시 반복적인 대피훈련과 점검을 통해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Q _ 불이 꺼진 뒤에도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산불 이후 고령 주민들에게 가장 오래 남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보셨습니까?

A _ 산불 이후 피해 지역을 순찰하면서 느낀 것은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어려움이 불이 꺼진 뒤에도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장 거주할 공간과 생계 문제도 중요하지만, 고령 주민들에게는 오랜 시간 쌓아온 생활 기반과 공동체를 잃었다는 정신적 충격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집이 불타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집에 담긴 삶의 기억과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이 고령 주민들에게는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외로움과 불안,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이어지고, 작은 불씨나 연기만 보여도 불안감을 느끼는 트라우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산불 이후 지원은 주거와 생계 복구에 그치지 않고, 심리 치료와 공동체 회복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_ 앞으로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꼭 바뀌어야 할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A _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민 교육과 마을 단위 대피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느낀 것은 고령 주민들이 재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대피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평소 재난의 위험성과 대피 행동 요령을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문자에 국한된 재난 알림 체계에서 벗어나 라디오·TV·마을 방송 등 고령자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 이·통장을 중심으로 한 순찰 체계와 함께 일정 가구 수마다 담당 돌봄 인원을 편성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산 피해에 대한 불안이 대피를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피해 보상과 복구 지원 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초고령 사회에서 재난 대응은 사전 예방과 대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초고령 사회 재난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권}

초고령 사회의 재난 피해자 권리

글_ 정지연(‘함께하는 연구’ 책임연구원)



재난 피해자의 권리, 노인에게도 닿고 있는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가 재난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304명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은 국가가 주는 지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데 머물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했고, 진상규명 과정에 참여하기를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했다. 재난 피해자는 단지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가, 아니면 진실을 알고 조사에 참여하며 회복의 방향을 함께 결정할 권리를 가진 주체인가.

세월호 이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철도 참사가 반복되는 동안 피해자와 유가족은 권리의 언어로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2026년 5월, 세월호 참사로부터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명시하고, 수색·조사 참여·구제·추모와 공동체 회복사업 참여 등 재난 피해자의 여러 권리를 법률로 규정했다. 이는 분명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재난 피해자의 권리는 과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닿고 있는가. 권리가 법에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가 그 권리를 똑같이 누리는 것은 아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누가 더 크게 다치고 더 많이 죽고 더 늦게 회복하는지는 모두에게 같지 않다. 나이, 장애, 건강상태, 소득, 가족관계, 거주지역, 정보 접근성에 따라 피해의 크기는 달라진다. 그래서 재난 피해자의 권리는 모든 사람의 삶의 조건을 출발점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에서 그중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나이’다.

통계청의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로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되었다. 이 비율은 2036년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 노인 인구 중 상당수는 혼자 살고 있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는 3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난은 바로 이런 삶의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재난 피해는 모두에게 같지 않다

여러 국내외 사례는 노인이 재난에서 더 큰 위험에 놓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 카트리나에서는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75세 이상 고령자였다. 그 연령대가 지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서도 일본 경찰청 집계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나이가 확인된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2025년 경북 영덕 산불에서는 사망자 10명의 평균 연령이 84세, 최고령자는 101세였다. 2023년 오송 지하철도 참사에서도 사망자 14명 중 7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통계는 단지 “노인이 많이 죽었다”는 사실만을 말하지 않는다. 재난 경보를 제때 이해했는지, 대피할 교통수단과 도움이 있었는지, 혼자 사는 노인을 확인하는 체계가 작동했는지, 몸이 불편한 사람을 전제로 한 대피계획이 있었는지를 함께 묻게 한다. “그 지역에 원래 노인이 많이 살았기 때문 아닌가?”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면 재난 대비도 당연히 노인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 거동이 느린 사람, 혼자 사는 사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미리 고려했어야 한다. 노인의 높은 피해는 우연이 아니라, 예견할 수 있었지만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다.

이 불평등은 사망과 부상에서 끝나지 않는다. 재난 이후에는 노인 생존자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를 잃은 노인 유가족, 재난을 목격한 노인도 피해자로 남는다. 이들은 정보를 얻고, 지원을 신청하고, 심리적 회복을 이어가고, 조사와 회복 과정에 참여하는 데서 또 다른 장벽을 만난다. 노인의 재난 피해를 권리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대피와 구조의 순간만이 아니라 재난 이후 회복과 참여과정까지 함께 살피는 일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노인을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층과 함께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법에서 취약계층이라



부르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난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도 재난 이후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의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두에게 같은 절차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나이·건강상태·장애 여부·가족관계 등 각자가 처한 조건을 살펴야 어떤 피해자가 어디서 권리를 더 쉽게 침해받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노인을 보호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노인은 자신의 안전과 회복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다. 재난 정책이 노인을 위해 만들어진다면서 정작 노인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권리 보장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의 재난 피해를 살펴보면 세 가지 권리가 특히 중요하다.

재난 정보를 이해하고 대피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정보권과 자기결정권, 재난 이후 고립되지 않고 돌봄과 건강 지원을 받을 권리, 그리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사와 회복 과정에 참여할 권리다.

디지털 벽 앞의 노인: 정보와 자기결정의 권리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는 긴급재난문자, 뉴스, 앱 알림 등을 통해 정보를 받는다. 산불, 지진, 폭염 같은 상황에서 빠른 정보는 생명과 직결된다. 하지만 노인에게 디지털 중심의 정보 전달 방식은 높은 벽이 될 수 있다. 문자는 왔지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고, 앱 설치 방법을 모르며, 지원금 신청 절차를 따라가기 어렵다. 가족이나 이웃이 곁에 있다면 도움을 받지만,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장벽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 조사」는 디지털 격차가 노인의 정보 접근과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난 상황에서는 이 격차가 더 직접적인 위협으로 이어진다. 몇 분의 차이가 생사를 가르는데, 위험을 가장 빨리 알아야 할 사람이 가장 늦게 알게 된다면 그것은 정보 전달의 실패다.

재난 이후에도 복구 지원금·임시주거 신청, 피해 접수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질수록 노인 피해자는 권리가 있어도 행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난 정보는 디지털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 긴급재난문자와 앱 알림뿐 아니라 유선전화, 라디오, 마을방송,

방문 확인, 이웃 돌봄망이 함께 작동해야 하고,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정보가 실제로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대피하십시오”라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이동이 어려우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가 함께 안내될 때 정보권은 비로소 실제 권리가 된다.

잃어버린 관계, 끊어진 돌봄: 회복의 권리

재난 이후 노인의 피해는 몸의 상처나 재산 피해에만 그치지 않는다. 집을 잃고 임시주거지로 옮겨가면 익숙한 동네, 이웃, 병원, 복지관, 시장, 산책길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변화지만, 노인에게는 삶의 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다.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연구들은 주거 피해와 사회적 고립이 재난 이후 우울과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 피해자에게 회복은 집을 고치고 보상금을 받는 일을 넘어, 다시 사람을 만나고 익숙한 일상과 돌봄의 관계로 돌아오는 일이다. 관계가 끊어지면 회복도 끊어진다.

재난 피해자가 유가족이 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노년기에 배우자나 자녀를 잃은 사람은 깊은 슬픔과 함께 일상의 돌봄 공백을 겪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조차 자녀를 잃은 노년기 부모가 처음에는 유가족 모임에 참여했지만 정서적 고통이 커져 더 이상 나가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지원체계가 신청자 중심으로만 설계되어 있다면, 가장 힘든 사람이 오히려 지원 밖에 남게 된다. 돌봄이 필요한 시점에 돌봄이 먼저 다가가야 한다. 노인 피해자에게 회복은 개인의 의지로 버티는 일이 아니라, 익숙한 관계망을 회복하고 필요한 돌봄과 건강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는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은 재난 피해자를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보고, 진상규명과 회복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노인 피해자의 권리는
노인의 삶의 조건에 맞는 정보전달,
돌봄과 건강의 안정적 제공,
재난 대응과 회복과정에서의 참여가
가능할 때 보장된다.

결정하는 자리에 노인은 있는가: 참여의 권리

재난 대응과 회복 과정에서 노인 피해자는 자주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 정책은 노인을 위해 마련된다고 하지만, 전문가나 행정기관, 가족이 노인을 대신해 말하고 정작 노인은 결정의 자리에 초대되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어떤 주거지원이 적절한지, 어떤 정보 전달 방식이 이해하기 쉬운지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 당사자가 말할 기회가 없다면 정책은 쉽게 빛나간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도 재난 피해자를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보고, 진상규명과 회복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모임이나 공청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정보가 앱이나 포털로 공유되면 노인 피해자는 참여의 출입구를 찾기 어렵다. 이동이 불편하거나 거주지가 멀면 오프라인 회의 참여도 쉽지 않다. 결국 참여권은 형식적으로는 열려 있어도 일부 사람에게만 접근 가능한 권리가 된다. 참여할 수 있는 방식 자체를 노인의 조건에 맞게 만들고, 재난 대비·대응·회복의 모든 단계에서 노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권리는 선언에서 실천으로 옮겨간다.

권리가 모두에게 닿으려면

「생명안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권리가 법에 적혀 있다고 자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닿는 것은 아니다. 권리가 실제 권리가 되려면, 그것을 행사하는 방식이 사람들의 삶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피해의 크기와 회복의 속도는 피해자가 처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이 사실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노인이 재난 앞에서 더 많이 죽고, 더 늦게 회복하고, 더 쉽게 잊힌다면, 재난 피해자의 권리는 아직 모두에게 닿지 않은 것이다. 초고령사회에서 재난 대응은 노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노인을 권리를 가진 피해자이자, 자신의 안전과 회복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주체로 볼 때, 재난 피해자의 권리는 비로소 일부의 권리가 아니라 모두의 권리가 될 수 있다. 「인권」

참고 자료
이 글은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2025), 국가인권위원회 「재난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24)·「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2023)·「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2022)를 주로 참고했다. 재난별 고령층 피해 현황은 영덕군 「산불피해현황」(2025), 대전일보(2023. 7. 18.)와 동아일보(2011. 4. 17.) 보도, 미국 루이지애나주 보건부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망자 분석(2008), 동일본대지진 이후 노인 사망 위험에 관한 국제 연구(Hikichi et al., 2017) 등을 바탕으로 했다.

몰랐던 길 정영룡(작가)



그 누구도 재난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기를 !

한낮의 폭염이 시작된 후, 창문 너머 아이들 소리가 사라졌다.
그늘 하나 없는 놀이터가 텅 비었다. 뜨겁게 달궜진 미끄럼틀과
그네, 시소가 충분히 식기 전까지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을
듯하다. 이렇게 폭염은 사람들의 일상을 조용히 잠식한다.
누군가에게는 놀이를,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터를 빼앗
으며 삶의 공간을 좁힌다. 마치 재난 현장처럼 말이다.

글_ 박병은(모든사람_인권교육연구단체)



NO ONE ALONE!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폭염은 자연재난이다. 기후위기가 불러온 홍수나 한파처럼 피할 수 없는 재난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폭염을 그저 ‘무더운 여름’ 정도로 여기는 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재난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어도 도로가 통제되거나 대중교통이 멈추지 않는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학교는 정상 운영된다. 겉으로 보기에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계기상기구(WMO) 사무총장 셀레스테 사울로가 “극심한 폭염은 기후 관련 재해 중 가장 치명적이지만, 가장 인식이 부족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재해”라고 말한 이유를 알 것 같다. 실제로 폭염은 소리 없이 사람들의 삶을 억누른다. 더 나아가 부채 하나로

더위를 견뎌야 하는 사람들, 그늘막 하나에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 뜨거운 태양 아래 몸을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한다. 기후재난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고, 그 규모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니,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이제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십여 년 전 7월의 어느 날, 한 초등학교에서 기온이 32도를 넘는 한낮에 특수학급만 에어컨 가동을 제한한 사건이 있었다. 교장실과 행정실을 비롯한 모든 학급에는 에어컨이 가동되었지만, 특수학급은 학생 수가 적고 그늘진 1층에 있다는 이유로 냉방이 허용되지 않았다. 당시 학교는 특수교과운영비 일부를 책상 교체와 학교 페인트 공사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같은

학교의 같은 학생이었지만, 누가 더위를 견뎌야 하는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특수학급 학생과 교사의 안전보다 예산 절감이 우선되었던 이 사건은 과연 과거의 일로만 남아 있을까?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반대한 아파트 입주민들, 교정시설 내 냉방 개선을 비난하는 글들을 보면, 과거에 비해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선뜻 답하기 어렵다. 폭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재난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 결국, 뎃다 못해 뜨거운 열기를 온전히 혼자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은 늘 그 자리에 있다.

그러니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휴식 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라는 내용의 ‘폭염발생 시 행동요령’은

이들에게 허탈할 수밖에 없다. 폭염을 피하지 못하는 원인을 정보 부족이나 개인의 부주의에서 찾는 듯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안내는 필요하지만, 과연 이 방법을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인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 누가 선풍기조차 켜지 못한 채 여름을 나고 싶겠는가. 또 그 누가 일터에서 “폭염이니 바깥일을 하지 않겠다”라거나 “충분히 쉬고 일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15분 정도의 낮잠으로 개인 건강을 유지합니다.”와 같은 행동요령을 접할 때면, 과연 이 안내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게 된다. 폭염이 개인의 의지만으로 피할 수 없는



재난이라면, 국가가 시민에게 행동요령을 알렸다고 해서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폭염과 같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그 피해 정도는 같지 않다. 더욱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깊게 만들고, 그 불평등은 다시 재난에 대한 취약성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유로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은 2025년 제8차 세계재난위험감축 플랫폼 결과보고서에 재난의 위험을 줄이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요구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재난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 파악하고, 여성·장애인·노인 등이 재난 대응의 수혜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 국가의 재난 대응 수준은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얼마나 보호

하고 포용하는지를 통해 드러난다. 따라서 국가는 재난 앞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책무를 이행할 때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한 것이다.

해가 저물자 다시 아이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낮 동안 텅 비어 있던 놀이터에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길고 긴 여름 동안 저마다의 방식으로 무더위를 피할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이 계절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알리며, 그 곁을 함께 지키는 것 그것이 폭염이라는 재난 앞에서 그 누구도 홀로 남겨두지 않기 위한 시작이다. **인권**

1) 경향신문 www.khan.co.kr/article/202601131407001
 2) 국민안전24 누리집, 폭염발생 시 행동요령

돌봄에서 권리로 노인 인권 보장을 향한 국제적 노력

2025년 봄,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전 세계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노인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협약 초안을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외교적 합의를 넘어, 수십 년에 걸친 오랜 논의의 결실을 의미한다.

글_ 나영재(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놀랍게도, 지금껏 노인만을 보호하는 국제인권조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을 위한 조약(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아동을 위한 조약(아동권리협약, CRC), 장애인을 위한 조약(장애인권리협약, CRPD) 등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으나, 전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을 위한 전문 조약만은 빠져 있었던 것이다.

물론 기존의 인권 조약들이 노인을 아예 무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인이 겪는 차별, 돌봄 과정에서의 학대, 의료 접근권 침해, 사회로부터의 배제 같은 문제들은 기존 조약의 틀 안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국제 인권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규범적 공백(normative gap)'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공백으로 노인들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채택되자 노인들이 겪는 규범적 공백이 더 가시화되었다. 많은 노인들이 노화로 인해 장애 유사 상황에 처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을 위한 전문 조약은 있는 반면 노인을 위한 전문 조약은 없었다.

국제 사회가 노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고령화총회에서 각국은 노인을 위한 국제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이어 1991년에는 유엔 총회가 '유엔 노인 원칙'을 결의로 채택했다. 이 원칙은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이라는 다섯 가지 가치를 노인의 삶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노인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품위 있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 나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니었다.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차 세계고령화총회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행동 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이 채택되었다. 이 문서에는 노인을 단순한 사회적 부담이 아니라 사회 발전의 주체로 보는 시각이 담겼다. 하지만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 다양한 선언과 원칙, 행동 계획이 쌓여갔지만, 나라들이 실제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여전히 없었다.



이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2010년, 유엔 총회는 특별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2010년 설립된 ‘고령화에 관한 개방형 실무그룹(OEWGA)’은 이후 14년 동안 뉴욕에서 14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노인 인권 조약에 담겨야 할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노인 차별 금지, 자율적인 삶을 살 권리, 적절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권리, 일자리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광범위한 의제들이 논의되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말해주듯,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나라마다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 재정 능력, 기존 복지 제도가 달랐고, 새로운 조약을 만드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이도 엇갈렸다. 그럼에도 토론은 멈추지 않았다.

2024년 5월, 마침내 제14차 회의에서 실무그룹은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 노인 인권 보호에 분명한 공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만드는 것이라는 합의였다.



노인은 취약한 존재가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다

2025년 4월 3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58차 회기에서 결의 58/13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결의의 핵심은 노인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만들기 위한 정부 간 실무그룹(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IGWG)을 공식 출범시키는 것이었다. 만장일치로 모든 나라가 동의했다는 것은, 노인 인권이 이제 더 이상 일부 나라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 공통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 결의는 단순히 회의 개최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 노인을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노인을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으로만 보는 복지 중심의 관점에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로 재정립하는 것. 이것이 이 결의가 담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다.

결의가 채택된 이후, 국제 사회의 움직임은 빠르게 이어졌다. 2026년 2월 제네바에서 첫 번째 조직 회의가 열렸다. 브라질, 슬로베니아, 필리핀, 감비아, 아르헨티나 등 5개국 이 핵심 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이끌었고, 전 세계 100여 개 노인 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조직 회의 이후, 각국 정부와 국가인권기구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는 조약의 구조와 원칙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RHI)의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으로서 28개 국가인권기구의 의견을 모아 공동 제출하기도 했다.

2026년 7월과 10월에는 협약의 실질적 내용을 논의하는 본 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각국 정부와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노인 당사자들이 테이블에 앉아 조약의 글자 하나하나를 다듬게 된다.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간단히 말하면, 조약을 비준한 나라들은 노인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조약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위원회가 생기고, 당사국들은 주기적으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이 만들어진 이후, 많은 나라에서 장애인 관련 법률이 개선되고 국내 정책이 바뀐 것처럼, 노인권리협약도 각국의 노인 정책과 법률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물론 협약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협약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어떤 권리를 담을 것인지, 감시 체계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두고 나라들 사이에서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것이다. 재정 문제도 걸림돌이다. 유엔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적 협의를 충분히 열고 모든 나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다. 결의 58/13은 협약 성안 과정에서 노인과 그 대표 조직의 참여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노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결국 노인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통계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존엄성과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인간으로서 노인들의 목소리가 이 과정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1982년 비엔나 행동계획에서 출발해 40년을 넘게 달려온 긴 여정이 이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인권 가치를 향한 오랜 노력이 실질적인 권리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인권**

아무도 마주 앉지 않은 식탁
아무도 “많이 드세요” 하지 않는 식사

노인의 밥상 홀로 먹는다는 것의 의미

초고령사회 원년, 우리는 200만 독거노인의 밥상 앞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가. 먹는다는 행위는 생존의 문제이기 이전에 관계의 문제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수저를 드는 일, 그 평범한 장면이 어떤 이에게는 평생 다시 오지 않을 기억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노인의 밥상에서 외면해온 것은 영양이 아니라 존엄이다.

글_ 편집실

밥은 혼자 먹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이 불을 피워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한 순간부터, 식사는 혼자가 아니었다. 불 앞에 모인 사람들, 같은 그릇에서 나눈 음식, 그 온기 속에서 언어가 생겨났고 공동체가 형성됐다. 밥상은 영양을 섭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2026년, 초고령사회 원년으로 공식 진입한 한국에서 약 230만 명의 독거노인이 매일 혼자 밥상 앞에 앉는다. 아무도 마주 앉지 않은 식탁, 아무도 “많이 드세요” 하지 않는 식사. 이 침묵이 단순한 고독의 문제가 아닌 이유는, 혼자 먹는 밥상이 곧 사회로부터 단절된 삶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하루 한 끼 이상을 거르거나 제때 먹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이유를 잃어가는 것이다. 혼자 차리는 밥상은 점점 간소해지고, 간소해진 밥상은 점점 건너뛰어지고, 건너뛰어진 식사는 결국 몸과 마음 모두를 허물어뜨린다. 노인의 결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단절의 결과다.

서비스는 있고, 사람은 없다

정부는 노인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가 급식 서비스와 경로당 급식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의 틈새에서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재가 급식 서비스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 도시 외곽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배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허다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서비스가 끊기는 구조적 공백이 반복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락 배달’이라는 행위가 음식만 전달하고 사람은 전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 앞에 놓인 도시락은 영양을 공급하지만, 눈을 맞추고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급식이 아니라 투하에 가깝다. 실제로 급식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은 반찬의 맛이 아니라 ‘먹는 동안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먹는 행위에서 관계를 제거하면 남는 것은 생존뿐이다. 우리 사회의 노인 식사 돌봄 정책은 지금 생존은 챙기고 존엄은 누락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식탁의 인권, 다시 묻는다

먹을 권리는 유엔이 규정한 기본적 인권이다. 그러나 인권으로서의 식사는 충분한 열량 섭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누구와 먹는지, 어떤 환경에서 먹는지, 먹는 동안 존중받고 있는지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노인의 밥상에서 인권을 묻는다는 것은 반찬 가짓수를 세는 일이 아니라, 그 식탁에 온기가 있는지를 묻는 일이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도시락이 아니라 더 많은 마주 앉음이다. 식사 돌봄을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닌 관계 회복의 행위로 재정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혼자 먹는 노인 옆에 누군가 앉아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라고 묻는 것 그것이 정책이 되어야 한다.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대화, 같은 국을 떠먹는 시간, 식사 후 “맛있었어요?”라고 확인하는 눈빛. 이 모든 것이 노인에게는 내가 아직 이 사회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된다. 2026년, 우리는 230만 개의 홀로인 밥상 앞에서 선택해야 한다. 식사를 해결할 것인가, 식탁을 회복할 것인가. ^{한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줄 방법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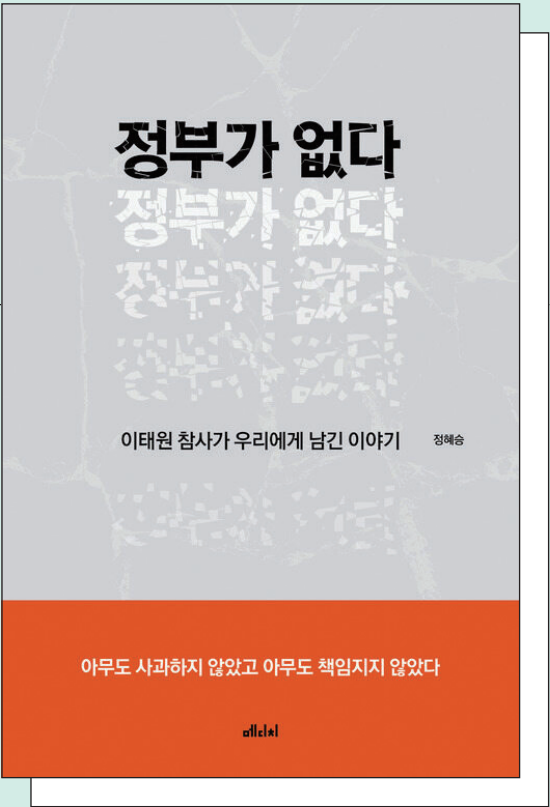
혹시 당신은 헌법 34조를 아는가? 바로 떠오르는 헌법 조항이 아닐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헌법 34조의 시대를 새삼 시작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를 거치면서 헌법을 다시 배웠다.

글_ 정혜승(복살롱 오티움 공동대표)

정부가 없다

정혜승

당초 우리 사회는 헌법 1조를 금과옥조처럼 외쳤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이다. 유신 독재와 5공화국에 맞서 1987년 민주화 투쟁에 나선 시민들은 주권이 독재자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목놓아 부르짖으며 헌법 1조를 각성했다. 헌법 10조의 시간은 한참 뒤 2000년대에 본격 찾아왔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며, 행복추구권이 있다니. 이 조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덧붙인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주권 선언에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지키겠노라 천명한 헌법, 멋지지 않은가?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자 배상청구권 문제 관련,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1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책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명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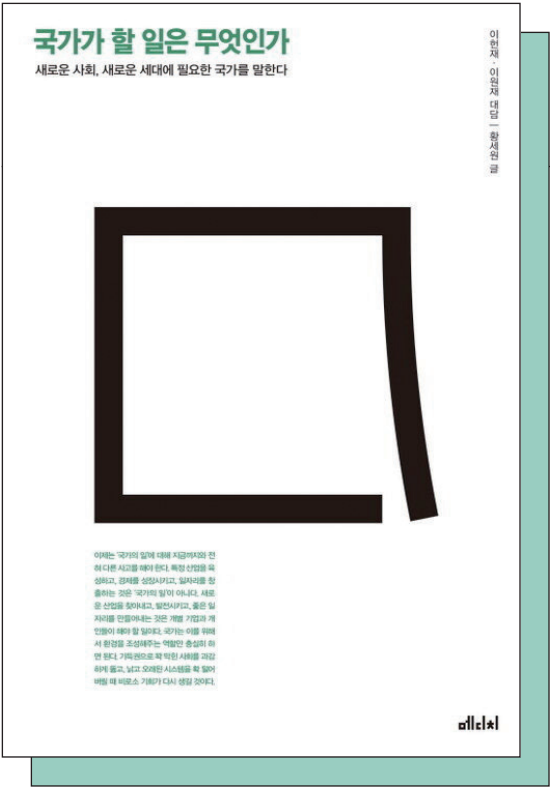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역장이 무너져서 쓴 책이 <정부가 없다>(2023)였다. 나는 책을 쓰면서 헌법 34조를 발견했다. 재난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재난과 참사는 정부가 일만 제대로 해도 상황이 달라진다.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헌재

헌법 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한 6개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국가는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했다. 여자의 복지와 권익이 노인과 청소년, 신체장애자와 함께 묶였다. 헌법은 정부로 하여금 약자에 더욱 신경쓰라고 이들을 열거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제6항은 21세기의 시대 정신이다. 이 같은 헌법 34조를 각별히 강조한 이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다. 당대 관료집단의 대부와 다름없던 그는 헌법 34조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 그는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2017)라는 대담집에서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34조를 언급했다. 이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했다.

“국가의 자원을 쓸 권한을 국민에게 위임받은 정부는 ‘인간다운 생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보장해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출발하면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야 하느냐, 경제성장으로 가야 하느냐의 논쟁이 필요없습니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헌법을 만들 때 이미 합의됐다고 봐야 합니다.” -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23쪽. 이헌재 전 부총리는 이런 주장에 대해 좌파라고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우리 헌법은 조금도 좌파적이지 않은 헌법”이라고, “지금의 헌법은 당시의 기득권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모여 최소한의 합의를 거쳐 통과시킨,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사회적 합의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애덤 코노버 : 정부가 왜 이래

다큐멘터리

이처럼 복지와 권익 향상, 재해 예방과 국민 보호가 헌법정신이라는 데 수긍하지 않을 이는 없다. 다만 핵심은 디테일에 있다. 헌법 34조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세심한 정책을 필요로 한다. 재난과 참사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위기는 평등하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 장대비가 쏟아진다고 해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껴본 적 있는가? 폭우로 곳곳에 물이 넘치고 흙이 무너져 내릴 때 산자락 단독주택의 어머니를 걱정하는 이의 불안함을 난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짓단이



젖은 불편함 정도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 근처에도 못 간다. 도시의 고층 아파트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다 젖은 기억이 없다.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는 좀 더 정확하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

위험한 곳을 먼저 살피고, 소외되기 쉬운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고령자,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이, 만성질환자 같은 약자와 건강한 보통 사람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달라야 한다. 이미 헌법 34조 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다. 정보 접근부터 대피와 구조 활동, 의료와 돌봄은 도움이 가장 절실한 이들에게 찾아가는 공공 지원이어야 한다. 예컨대 해마다 ‘가장 더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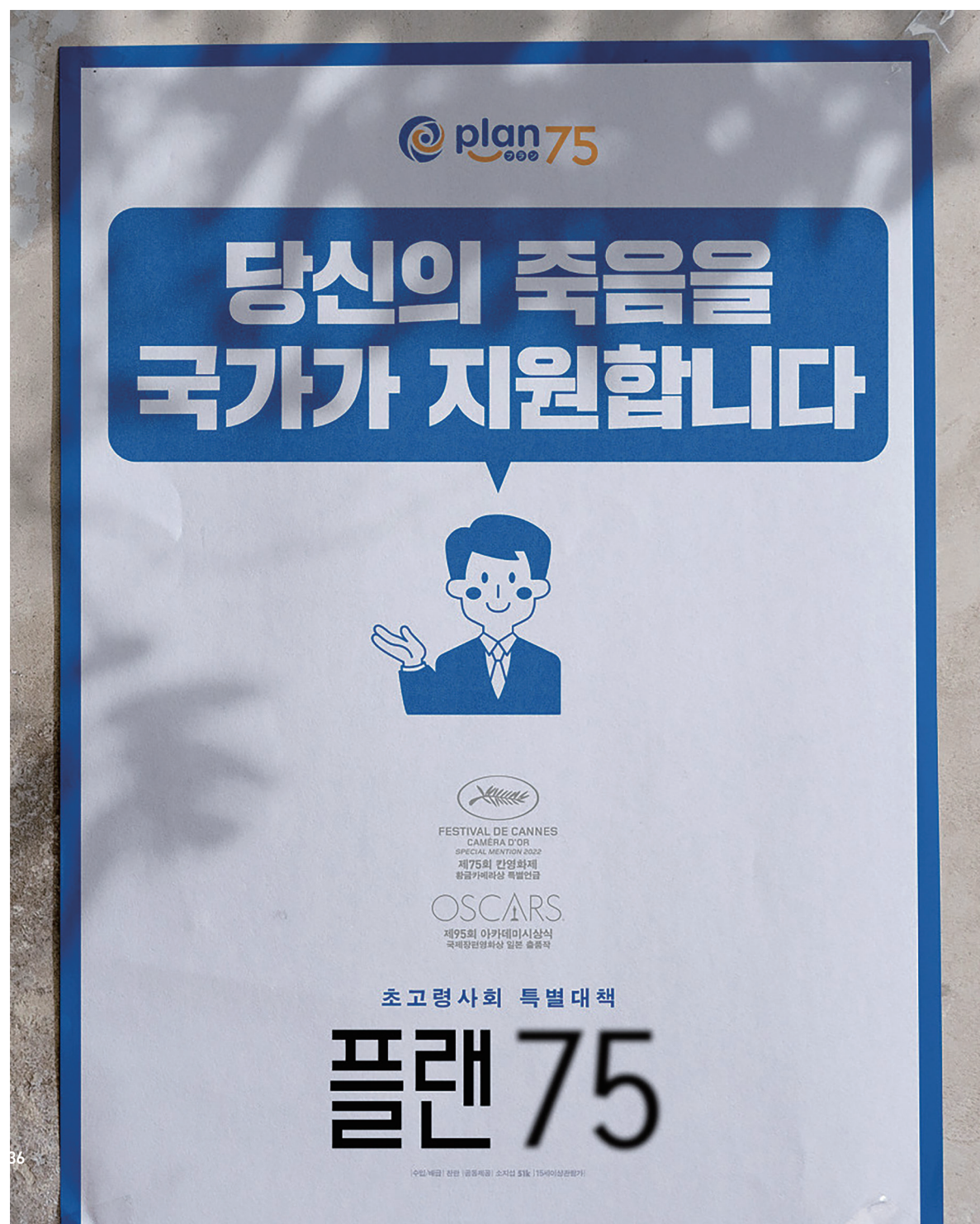
여름’이라는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기후온난화 시대에 온열질환 사망자의 60~70%는 고령층이다. 이제 가장 뜨거운 한낮에는 야외 노동을 막아야 하고, 에어컨이 기본값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기후라는 것을 인정하자. 농촌의 어르신들이 한여름 가장 뜨거운 시간에 논밭에 나가지 않도록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고, 쪽방촌 노인들이 피신할 수 있는 에어컨 뽕뽕한 쉼터가 동네마다 있어야 한다.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정부가 어렵히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자. 정부는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릴 때만 일을 잘한다. 약자를 지원하기보다 강자를 챙기는 데 급급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1929년 대공황으로 은행들이 파산하자 미국 정부는 소비자를 구제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미국 정부는 소비자 대신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만 구제했다.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정부가 아니라면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대형 위기에서 힘 있는 자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정상인가? 정부는 종종 로비에 밀려 국민 보호를 뒷전으로 미룬다. <애덤 코노버: 정부가 왜 이래>(The G word with Adam Conover, 2022)는 코미디언이 정부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다큐멘터리다.

1992년 미국 정부는 특정 업계 편을 들어주면서 식품영양 기준을 변경, 신선한 과일과 채소 권장량은 절반으로 줄이고, 곡물은 2배로 늘렸다. 2019년에는 돼지고기 검사관을 40%로 감축해버렸다. 정부 농업 보조금은 절반이 농업 대기업들 몫이다. 국민 세금으로 구축한 기상정보를 민간 기업이 유료화해버린 과정도 적나라하다. 기업 로비에 밀려 국민 보호를 뒷전으로 미루는 정부, 예산을 아낀답시고 정부의 필수적 역할을 축소하는 정부도 모두 국민들이 투표로 선택했다. 일 잘하는 정부를 가지려면 간간하게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권>

노인의 안락사를 권유하는 섬뜩한 사회 <플랜 75>



20세기 말 할리우드에선 <인디펜던스 데이> <아마겟돈> <딥 임팩트> 같은 재난 블록버스터가 유행이었다. 혜성 충돌, 외계 침공,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지구 종말이 다가오고 우여곡절 끝에 미국이 지구를 구한다는 이야기. <딥 임팩트>에선 혜성과 지구의 충돌로 인류의 멸망이 예고된 가운데 생존을 위한 지하 요새가 건설된다. 요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이라 미국 정부는 입소자 선정 기준을 발표하는데, 인류 문명을 재건하는 데 필수적인 전문가 인력을 제외하곤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된다. 다만 무작위 추첨에서도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55세 이상의 고령자다.

글_ 이주현 | 전 씨네21 편집장



누군가에겐 이것이 혜성 충돌이나 지구 멸망이라는 비현실적 공포보다 더 직접적이고 냉혹한 공포로 느껴지기도 했을 것이다. 재난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공리주의에 입각한 논리가 힘을 얻곤 한다.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 인간의 가치가 사회적 유용성과 생산성으로 평가될 때 가장 먼저 배제되는 부류 중 하나는 고령자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약자가 우선 보호되지만, 사회가 붕괴할 위기에 처하면 약자가 우선 희생되는 비극이 발생한다. 위기 상황에서 인권은 쉽게 유예된다. 여기서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은 이런 것이다.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가. <딥 임팩트>의 상황은 극단적 재앙에서 기인했지만, 하야카와 치에 감독의 <플랜 75>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 생명의 가치 평가가 일상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고착화된 일본의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영화는 초고령 사회에 일어날 법한 디스토피아적 세계 하나를 섬뜩하게 제시한다. 그것은 국가가 친절하게 노인의 안락사를 권유하는 사회다. 초고령 사회가 곧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는 시대,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75세 이상 국민에게 안락사를 권장하는 정책 ‘플랜 75’를 시행한다. 영화는 첫 장면에서부터 관객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는다. 노인 혐오 범죄가 발생한 현장, 장충을 든 청년은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넘쳐나는 노인이 나라의 재정을 압박하고 그 피해는 전부 청년이 받는다. 노인들도 더는 사회에 폐 끼치지 않을 것이다. 옛날부터 우리 일본인은 국가를 위해 죽는 걸 금지로 여겨 왔다.”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이 오프닝 시퀀스가 2016년 일본 요양 시설에서 일어난 고령자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플랜 75’가 국회를 통과했다는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온다. “일본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묘수가 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영화에는 ‘플랜 75’와 관련된 네 인물의 사정이 등장한다. 먼저 미치(바이쇼 치에코)의 이야기. 미치는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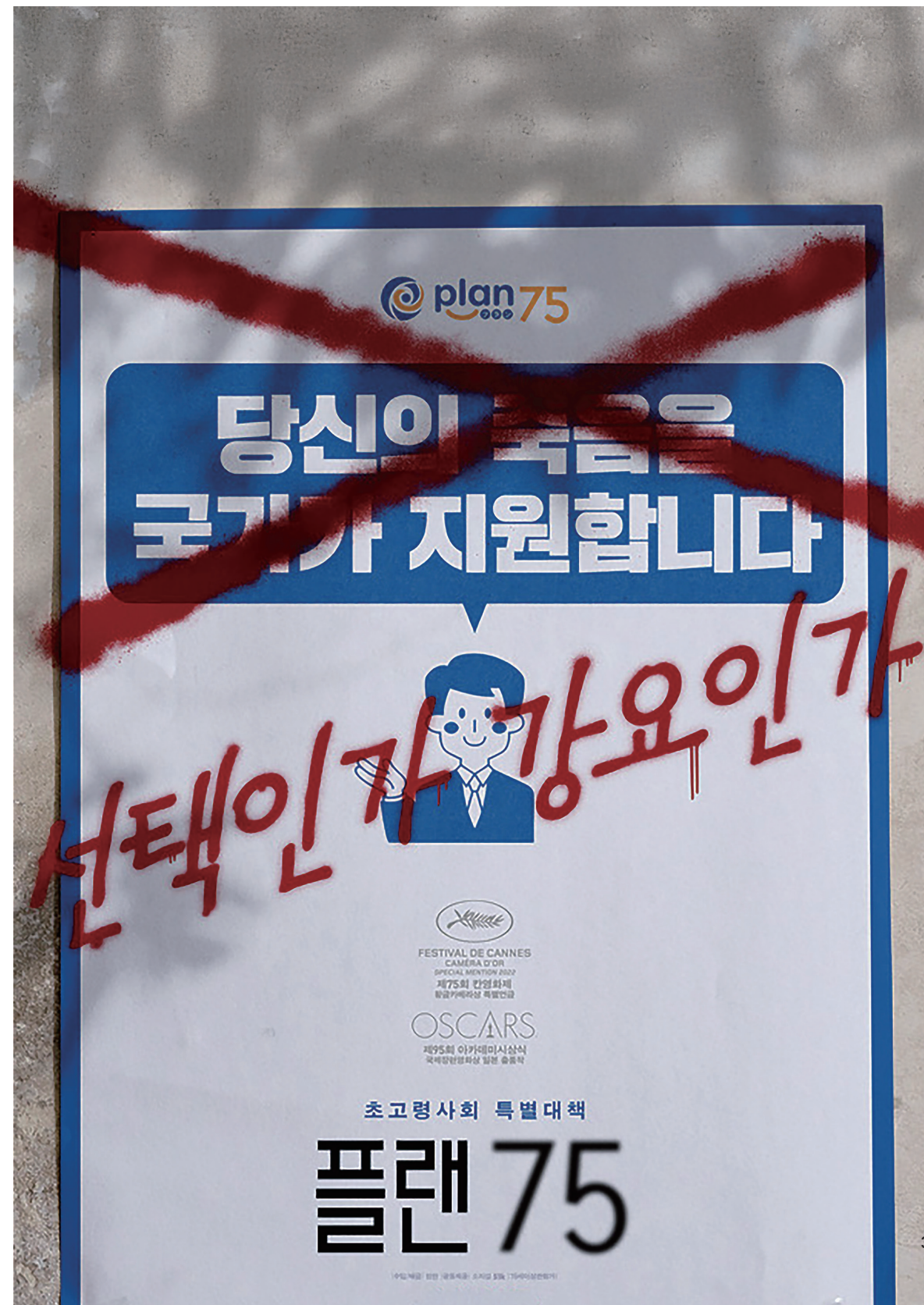
성실하게 삶을 꾸려가는 78세 여성이다. 가족은 따로 없다. 제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호텔의 동년배 동료가 업무 중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갑작스레 명예롭지 않은 퇴직을 하게 된다. 그녀에게 경험과 성실함이라는 무기가 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일도 새로운 집을 구하는 일도 녹록지 않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을 때, 노인들은 자신들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세상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미치도 마찬가지다. 세상으로부터 서서히 밀려난 미치는 열심히 국가가 홍보 중인 ‘플랜 75’의 신청서를 받아들게 되고, 인간다운 삶과 죽음을 보장하지 않는 세상과의 이별을 담담히 준비한다.

미치와 직간접적으로 엮이는 3명의 청년 세대의 이야기도 등장한다. 성실한 직장인의 태도로 노인들에게 ‘플랜 75’의 절차와 ‘혜택’을 설명하는 담당 직원 히로무(이소무라 하야토). 그는 순진한 대리자, 친절한 자살 권유자가 되어 국가의 합법적 살인을 돕는다. 그가 자신의 일에 도덕적 회의를 갖게 되는 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삼촌이 ‘플랜 75’를 신청하게 되면서다. 삼촌의 일을 처리하던 그는 자신의 일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잔인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고국에 있는 아픈 딸의 심장 수술비를 벌어야 하는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 마리아는 고객의 급료를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일이라는 제안에 ‘플랜 75’ 이용자의 유품 처리 업무를 맡는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애도 없는 죽음, ‘효율적 폐기’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을 경험한다.

마지막으로 ‘플랜 75’ 콜센터에서 일하는 요코. 미치의 마지막 말동무가 되어주는 요코는 수화기 너머로 미치의 따스한 마음을 느낀다. 미치 역시 요코와 통화할 때면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수다스러워지고 활기찬 모습을 보인다. ‘신청자가 (안락사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도록 잘 유도해야 한다’고 교육하는 상사의 말을 들으며, 교묘하게 악질적인 시스템의 본질을 확인한다.

영화에 굳이 3명의 청년 세대가 등장하는 이유는 영화 속 가상의 정책 ‘플랜 75’가 노년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영화에서 일본 정부는 ‘플랜 75’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조에 달한다고 홍보한다. 본질은 이거다. 평화롭게 죽을 권리를 제공할 테니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해달라는 친절한 권유가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위해 희생해달라는 협박. 그 협박의 화살은 언젠가는 노인이 될 청년 세대에게도 향할 것이다.

인간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하는 사회에 어떤 희망이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회는 통합될 수 있고, 어떻게 사회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켜 유지되는 시스템에서 어쩌다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과연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살아남은 젊은 세대는 과연 불안과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영화 <플랜 75>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 사회에 희망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인권」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이유로 한 임기제 근로자 계약 종료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 4월 27일 ○○광역시 ○○○구청 측이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하 '진정인')이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밝히자 계약종료를 통보한 행위를 차별로 판단하고, ○○○구청장에게 외부 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정인에 대하여 공정한 재심사를 진행할 것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5년 2월경 임신하여, 같은 해 7월경 ○○광역시 ○○○구 보건소(이하 '피진정기관') 소속 과장 및 팀장(이하 '피진정인들')과의 개인 면담에서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밝혔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같은 해 8월 3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던 도중, 10월 15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었고,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2025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계약종료는 진정인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계획 때문이 아니라 진정인의 평소 업무태도 및 협업 과정에서의 문제에 따른 동료 직원들의 불만 제기로 인한 것이며, 근무실적평가 점수가

낮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근무실적 평가 이전 개인 면담 과정에서 진정인이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밝혔고, 평가자인 피진정인들 모두 육아휴직 때문에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 진정인의 근무실적 평가에 육아휴직 사용 계획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아울러, 진정인이 근무실적평가 이전에 이미 임용약정기간 만료 안내를 받은 점, 근무실적평가 과정에서도 새로운 평가 기준이 사전 고지 없이 적용된 점, 유사한 기간 동안 진정인의 근무실적을 평가하면서 성과연봉 등급 결과와 책임용 평가 결과 간에 현저한 점수 차이가 나는 점, 진정인이 기존 두 차례의 임용 약정기간 동안(총 5년 근무) 평가결과가 양호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에 2차로 신규채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종료는 육아휴직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구청장에게 외부 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정인에 대하여 공정한 재심사를 할 것과, 향후 임신 및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소속 및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차별 및 모성보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



익명결정문 보기



관행에 따른 심야조사 강행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경찰청장에게 심야조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심야조사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관(이하 '피진정인')에게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당시 임신 중임을 알렸음에도 피진정인이 심야조사 원칙을 위반하여 이를 연속 장시간 조사를 강행하고 임신부인 진정인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진정인의 유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2026년 3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심야조사를 강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 진정인은 위 조항에 의해 심야조사요청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진정인 등 피의자가 심야조사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야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심야조사는 피의자가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먼저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에도, 수사관인 피진정인이 심야조사의 불가피성을 진정인에게 알리고, 진정인이 이에 '연내 조사 희망', '신속한 조사를 위해 요청함'이라는 사유로 심야조사요청서를 제출하여 진행되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사건 심야조사의 사유는 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요구하는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관의 심야조사 요청에 따른 피의자의 형식적 동의는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 관행을 근절하고 허위 자백 등의 인권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수사준칙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피진정인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이를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중대한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함에도 피진정인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임신부인 진정인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심야조사요청서에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심야조사 허용 사유 판단에 있어 피의자가 임신 등 건강 상태를 수사관에게 고지한 경우 이를 필수적으로 기록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안권}



익명결정문 보기



모든 임신부에 대한 수영장 이용 제한은 불합리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 6월 1일 임신부라는 이유로 수영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대학교 ○○○○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임신 7주 차였던 2025년 8월경, 3년 정도 다니던
○○대학교 ○○○○원 스포츠센터(이하 '피진정기관')
소속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기 위해 등록하려 하였다.

그러나 수영장 직원은 진정인의 가방에 부착된 임신부
배지를 확인하고는, 진정인이 임신부라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였다. 진정인은 다음 날 행정실 직원과의 통화에서도
'내부 규정상 임신부는 수영강습을 수강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같은 날 수영장 등록을 취소당하자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수영 강습은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어 가벼운 충돌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임신부 회원과 태아의
건강 및 다른 회원의 안전, 전체 수업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취소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임신이 자연적·생리적 상태이며, 임신부의
건강 상태와 운동 가능 여부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임신부를
위험군으로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수영장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권위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일반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수영이나 걷기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서울 및 부산 지역 다수의 공공 수영장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임신부라는 이유로 수영 강습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별적·구체적 검토가 없는
제한은 과도한 조치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전문의 소견 및 건강상태 확인,
이용자 동의 절차 마련, 운동 강도 또는 프로그램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 없이 임신을
이유로 진정인의 수영강습 등록을 취소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임산부 보호라는 명목으로 임신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일반화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체육시설 운영 과정에서 임신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



익명결정문 보기



공공기관 등 업무 수행 중 장애인에게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안내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 5월 6일 공직유관단체인 ○○○○재단(이하 '피진정기관')이 청각장애인 민원인(이하 '진정인')의 신청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에게 사례를 전파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장애인 대상 정책성 지원을 신청하면서,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포함하여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

그럼에도 피진정기관의 직원(이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에 진정인의 가족이 대신 전화를 받아 진정인이 장애 특성상 전화상담이 어려우니 대면상담, 서면안내 또는 보조적인 의사소통방식 제공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진정인은 2026년 1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 장애인차별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우선으로만 상담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진정인이 피진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에 사과하고 부지점장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하려 했으나 진정인의 가족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따라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3호 및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청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가족이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임을 알리고 전화 상담 이외의 별도의 상담방식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방식의 상담이나 안내 없이 진정인의 신청 건을 종결하였고, △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한 이후 진정인과의

대면상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진정인과 협의 없이 상담 방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또 다시 전화 통화의 방법으로 이를 안내하였다.

이는 피진정기관의 내부 매뉴얼에서 정하는 고객 응대 방법에 부합하지 않고 피진정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이나 안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업무 여건상 고객의 특성에 맞춘 상담을 제공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인권위는 이에 대해 “오히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체계가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행 운영 방식으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 사례를 공유하고, 장애인 응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



익명결정문 보기



인권위, '국가인권교육원과 함께 하는 인권 토크' 운영

국가인권교육원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다양한 문화행사 기획으로 협력 기반 다진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교육원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국가인권교육원과 함께 하는 인권 토크'(이하 '인권 토크')를 개최합니다. '인권 토크'는 국가인권교육원이 기초 및 광역 지자체,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지역 언론 등과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 기획 프로그램으로, <영화 함께 보고 인권 나누기(6월)>, <책으로 배우는 기후위기와 인권 북 토크(7월)>, <지역 주민 초청, 국가인권교육원에 바란다(8월)>, <지방 의원과 함께 하는 인권 토론회(9월)>, <마임공연으로 소통하기(10월)>, <미디어와 인권 리터러시(11월)>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 4월 용인특례시 기흥구에 개원한 국가인권교육원은 '모두를 위한 인권배움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자 강의실(30석 내외), 중강의실(60석 내외), 대강의실(100석 내외) 등 다양한 규모의 강의실을 비롯해 원격교육실, 토의실 등의 학습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인권에 관한 전시와 영상, 디지털 콘텐츠 등을 통해 인권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인권전시관과 콘퍼런스홀 등의 참여형 교육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교육원은 앞으로도 교육원 안팎의 다양한 공간에서 시민,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활발한 교류 협력을 기반으로, 양질의 인권 교육을 제공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권'

문의 031) 323-9512





국가인권위원회 캐릭터 '인권이'를 소개합니다



인권이는 국가인권위원회 CI 이미지를 바탕으로 태어난 캐릭터입니다.
인권이의 푸른색은 '창조'와 '생명', 음양오행에서 '봄'을 상징하는 청색의 의미를 반영한 것으로, 사람을 중히 여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이의 둥근 형태와 주황빛 원은 '다양성과 긍정', '해와 밝음', '조화와 포용', '공명정대'의 의미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권이는 '평화와 포용'을 상징하는 '비둘기와 손'의 이미지처럼,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며, 누구나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인권의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전합니다.

인 권 의 가 치 를 더 가 까 이 전 할 '인 권 이' 의 다 양 한 활 약 을 기 대 해 주 세 요 .

독자 후기 이벤트 안내!

독자 여러분, 이번 호 어떻게 읽으셨나요?
좋았던 칼럼 혹은 아쉬웠던 칼럼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한마디가 다음 호를 더 좋은 잡지로 만듭니다.

QR코드를 스캔해 짧은 후기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스캔 후 간단한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위가 함께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힘쓰겠습니다.

발행	2026년 7월 24일
창간	2003년 8월 1일 국제연속표준간행물[ISSN] 1599-9599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주소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3층 홍보협력과
발행인	안창호
편집주간	이석준
편집장	안성울
편집	박혜경
제작	(주)대통기획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권'은 비매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소통해요!



블로그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국가인권교육원
바로가기

더 나은 [인권]지와 함께해요!



구독 신청 및 해지



독자 후기 이벤트